

# 산재보험 약제비 청구서 샘플 변경 안내

## □ 샘플 버전

- (현행) 071Ver → (변경) 072Ver

## □ 변경 사항

### ○ 급여구분 착오로 인한 불능(반려) 처리 개선

-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등예방관리 비용 약제비 급여구분을 착오 청구 한 경우
  - (현행) 심사불능 처리하고 약국에서 재청구하여 지급처리
  - (개선) 심사담당자가 급여구분 변경(산재요양급여비용 ⇄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) 하고 직권 접수번호 생성하여 지급처리

※ 예) 산재보험요양급여 약제비 청구(명세서 3건 청구)

- (명세서 1,2) 산재요양급여 대상, (명세서 3)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 대상
- (개선내용) 명세서 1,2는 지급하고, 명세서 3은 급여구분 변경하여 합병증등예방관리 비용으로 직권 접수하여 지급 처리

### ○ 단가 자리 수 변경(심사평가원과 동일)

- 직권접수번호 생성하여 지급한 경우 가청구접수번호 결정통지서 반영

## □ 적용 일정

### ○ 산재보험 약제비 청구서 072버전 적용 시점: 2024년 1월 조제분부터

- 2024년 6월까지 071, 072 가능, 2024.7월 조제분 부터는 072버전만 가능

### ○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 제출

- 2024년 1월에 토탈서비스 동의서 제출 여부 반영 예정

※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약국만 급여구분 착오 건 직권접수번호 생성하여 지급 가능(미 제출한 경우는 현행처럼 심사불능 처리)

## □ 샘플일 주요 변경 내역

SAMFILE - ID(NAME)	변경 내역	비고
M011(약제비 청구서)	-	
M024.1(약제비 명세서 1-일반내역-필수)	-	
M024.2(약제비 명세서 2-상병내역-옵션)	-	
M024.3(약제비 명세서3-조제투약내역-필수)	· (단가) 자리 수 변경 · (1일투약량) 자리 수 변경	자리 수 변경
M024.4(약제비 명세서-처방내역-필수)	· (1회투약량) 자리 수 변경	자리 수 변경
M024.5(약제비 명세서-특정내역-옵션)	-	
I020.1(약제비 결정통지서 1)	· (차수) 가청 구접수번호 신설 · (구분) 급여종류변경 신설 · (신설) 보류 가청구 접수번호, 급여 종류변경 가청구 접수번호	급여종류 변경, 가청구 접수번호 신설
I020.2(약제비 결정통지서 2)	· (차수) 가청구 접수번호 신설 · (진료구분) 24, 25, 26 신설 · (급여종류변경액) 신설	진료구분 추가 급여종류변경 신설
I020.3(약제비 결정통지서 3)	· (차수) 가청구 접수번호 신설 · (단가, 정정단가, 수량, 인정수량, 총 인정수량) 자리 수 변경	자리 수 변경

※ 문의처: 산재요양부 ☎ 052-704-7491, 7496, 7497

전산시스템구축TF팀 ☎ 052-248-8816